

#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407
----------	------

2023년 12월 15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
-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- 상정일자 :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
【2023년 11월 21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서울특별시장)

#### 1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문금의 지급근거 신설 (안 제7조제6항)
- 나.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수정 (안 제7조제7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·강화되는 규제가 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사항이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
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3. 8. 17.~ 9. 6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#### 1 개정안의 취지

- 동 개정안은 서울시가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위문금에 대한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.

####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

- 국가보훈은 ‘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행위’이며 보훈의 주체는 국가와 국민이며 사회보상은 특별 희생에 대한 공동체 책임과 연대성의 표현이며 국가, 지자체, 국민의 책무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음.<sup>1)</sup>
- 따라서 서울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를 기반으로 수당 지급 등 적절한 보훈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<sup>2)</sup>등에 근거한 필요한 정책이라 볼 수 있음.
- 서울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,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고자 수당지급 등 각종 보훈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1) 김형석, 신화연, 이영자 and 이용재. (2020). 국가보훈대상자 인구추계 및 보훈급여금 전망: 코호트요인법을 중심으로. 한국보훈논총, 19(1), 1-24.

2)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법에서 규정한 목적<sup>3)</sup>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함.
- 전체 국가보훈대상자 14만 명 중 서울시의 보훈수당 대상자는 12만명으로, 대상자 및 보훈수당 지급 관련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### 〈표〉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현황

(2022. 12월 말 기준, 출처: 국가보훈처 / 단위 : 명)

구분	총계	독립유공자 및 유족	상이군경 (전상/공상)	전몰·순직 군경유족	무공·보국 수훈자	4·19 유공자	5·18 유공자	고엽제 후유의증 자	특수임 무 유공자	참전 유공자
<b>총계</b>	120,089	1,961	32,802	8,623	24,600	332	581	7,252	574	43,364
<b>본인</b>	77,903	2	16,842	0	9,392	160	489	7,252	402	43,364
<b>유족</b>	42,186	1,959	15,960	8,623	15,208	172	92	0	172	0

3)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(정의) 1. “희생·공헌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가.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
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- 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
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〈표〉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 현황

구 분	참전명예 (참전유공자)	보훈명예* (애국지사)	보훈예우 (민주화·특수임무)	생활보조 (저소득층)	독립유공생활지원 (저소득독립유족)
예산액	48,000백만원	52백만원	960백만원	11,040백만원	8,904백만원
월인원	40,000명	2명	800명	4,600명	3,710명
월지급액	10만원	100만원	10만원	20만원	20만원
지급주체	자치구	서울시	서울시	자치구	자치구

\* 보훈명예수당 : 애국지사 사망조의금 4백만원 포함

- 또한 관련 유공자·유족 및 유관단체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기념일에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음.
  - 지급일은 연 5회로 3·1절, 4·19 기념일, 5·18 기념일, 8·15 광복절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이 해당되며, 대상이 되는 관련 유공자 및 유족은 33,300명이며 유관 단체와 기관은 226개소로 나타나고 있음.

〈표〉 서울시 보훈 관련 기념일 위문금 지급현황

구 분	3.1절	4.19 기념일	5.18 기념일	6월 호국보훈의 달	광복절
대 상 자	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	4.19 유공자 본인 및 유족	5.18 유공자 본인 및 유족	6.25 참전용사 등	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
지 원 액 (인 지원액)	730백만원 (10만원)	31백만원 (10만원)	54백만원 (10만원)	885백만원 (5~10만)	724백만원 (10만원)
인 원	7,300명	312명	543명	15,995명/225개 단체/중앙보훈병원	7,050명

- 동 개정안은 위문금 지급대상 가운데 4·19 기념일, 5·18 기념일,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받는 민주유공자 및 6·25 참전용사 및 유족, 기관 등을 대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

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- 현재 해당 위문금은 동 조례 제5조 제4호<sup>4)</sup>를 근거로 지급되어 오고 있었으나, 해당 조항에서는 위문금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명확한 법적 근거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왔음.
  - 현재 3·1절 및 8·15 광복절에 위문금을 지급받는 대상인 독립유공자의 경우,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1항 3호<sup>5)</sup>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.
-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위문이란 위로하기 위하여 문안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며,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조<sup>6)</sup> 제1항에서는 “위문”에 대해 위문금의 전달, 위문품의 지급, 장병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, 이와 별도로 제2항에서 “위문

---

4)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) 시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에 시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게재
2. 보훈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 시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
3.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
4. 보훈의 달 및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

5.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

5)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생존애국지사에게 월 1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
2.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

3. 3.1절,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금 각 10만원 지급(직계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·자매를 포함한다)

4.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5.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
  - 가.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
  - 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사람 및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6)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위문"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.
  - 가. 위문금의 전달
  - 나. 위문품의 지급
  - 다. 삭제
  - 라. 장병 등 위문행사
2. "위문금"이란 국군장병 등 위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모금된 성금을 말한다.



현 행	개 정 안
<p>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(유족 및 가족 제외)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⑥ 제3항의 <u>생활보조수당</u> 및 제4항의 <u>보훈예우수당</u>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범위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4·19혁명기념일, 5·18민주화운동기념일, 호국보훈의 달 기념일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⑦ ----- 생활보조수당,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 및 제6항의 위문금 ----- -----.</p>

- 4·19, 5·18 위문금은 2007년부터,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은 2001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, 해당 조례를 통해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<sup>7)</sup>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7) 24년도 해당 위문금 지급으로 인한 소요예산은 859,700천원으로 추계됨.



### 3 종합의견

- 서울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해 연 5회 위문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, 해당 위문금 지급은 동 조례 및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고 있음. 그러나, 이 가운데 3·1절 및 8·15 광복절 위문금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통해 지급 근거가 위문금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바, 동 조례개정안을 통해 4·19 기념일, 5·18 기념일,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되는 위문금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동 조례개정안은 그 간 서울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해 오던 위문금에 대하여 조례에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0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
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문금의 지급근거 신설(안 제7조제6항)

나.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수정(안 제7조제7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·강화되는 규제가 없음
-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-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현재 갈등이 내재되었거나 진행  
사항이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 :  
해당없음

#### 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3. 8.17.~ 9.6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김미영(☎2133-7330)

##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범위 내”를 각각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생활보조수당 및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”을 “생활보조수당,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 및 제6항의 위문금”으로 한다.

⑥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4·19혁명기념일, 5·18민주화운동기념일, 호국보훈의 달 기념일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<신 설>

⑥ 제3항의 생활보조수당 및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⑥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4·19혁명기념일, 5·18민주화운동 기념일, 호국보훈의 달 기념일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⑦ ----- 생활보조수당,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 및 제6항의 위문금  
-----  
-----.

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비 용 추 계 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4·19, 5·18,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위문금 지급에 따른 예산 소요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# 가. 전제

- 4·19, 5·18 유공자 인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지급인원(약 900명)을 반영하여 적용함
-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인원은 최근 3년간 감소추이를 반영하여 연 평균 3.1% 감소율을 적용함
- 1인당 지급액은 4·19 위문금 100,000원, 5·18 위문금 100,000원,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50,000원으로 변동없음을 전제함
- 비용추계 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발생함

##### 나. 추계기간 : 5년(2024년~2028년)

#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≍ 4,067,1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합 계
세입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위문금 지급으로 인한 소요예산 (안 제7조 제6항 및 제7항)	859,700	835,800	812,700	790,300	768,600	4,067,100
	총 비용(b-a)	859,700	835,800	812,700	790,300	768,600	4,067,100

#### 4. 재원조달 방안 : 전액 시비(일반회계 편성)

#### 5. 작성자 :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김미영

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보훈대상자 현황

- 4.19, 5.18 유공자 인원은 전·출입 등으로 '21년~'23년(3년간) **연평균 약 900명**임

(단위: 명)

구 분		'21년	'22년	'23년
유공자 수	4.19, 5.18	920	896	895

-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 등으로 '21년~'23년(3년간) **평균 3.1% 감소하고 있음**

(단위: 명)

구 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유공자 수	17,549	18,084	15,995	15,886
전년 대비	-	↑535 (↑3.0%)	△2,089 (△11.6%)	△109 (△0.7%)

### 2. 위문금 지원대상자 예상 추이

- 4.19, 5.18 유공자 : 연평균 지급인원(900명) 반영
-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 : 연 3.1% 감소율 적용

(단위: 명)

구 분		'23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	합계 ( '24~'28)
지급인원	4.19, 5.18	895	900	900	900	900	900	4,500
	호국보훈의 달	15,886	15,394	14,916	14,454	14,006	13,572	72,321

### 3. 위문금 지급액

- **'24년~'28년 위문금 연간 지급액 총계 ≍ 4,067백만원**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 분	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	합계 ( '24~'28)
지급인원	4.19, 5.18(a)	900	900	900	900	900	4,500
	호국보훈의 달(b)	15,394	14,916	14,454	14,006	13,572	72,342
소요예산 (a*100,000원+b*50,000원)		860	836	813	790	769	4,067